

4. 法人稅法施行規則中 改正令

總理令 第557號 1996. 3. 21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공제업(기금조성사업에 한한다)”을 “공제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손비의 범위)”를 “(수익과 손비의 범위)”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이한 매출에누리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다.

제6조중 “유가증권을 말한다”를 “유가증권을 말하되, 증권회사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매매하는 유가증권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하는 유가증권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로 한다.

제13조 제2항중 “제1항과 제7조 제1항”을 “제7조 제1항”으로,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의 4 제2항중 “귀속사업연도는 대통령령 제14467호”를 “귀속사업연도는”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달리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계산한다”를 “당해 사업연도의 거래중 일부의 거래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한하여 영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다르게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로 한다.

제1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7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외화부채등”이라 함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설(리스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운용리스자산에 한한다)의 대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의 취득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을 말한다.

제16조의3중 “제15조의3 제1항 제1호”를 “제15조의3 제1호”로 한다.

제17조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7호중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하며, 동조 제13호·제17호·제19호·제22호·제32호·제36호·제39호·제40호·제45호 및 제4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제1호 내지 제49호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8조 제3항 제11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

제18조 제3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노인휴양소를 제외하며 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용 부동산중 다

-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 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 나. 노인복지시설의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10에 규정된 기준면적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실외 체육시설 면적
- 제18조 제4항에 제11회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의3.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당해 토지
- 가. 당해 법인이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에 1996년 3월 31일까지 매수신청을 하여 당해 토지가 1996년 12월 31일까지 매각될 것.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일 현재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17. 토지를 취득한 후 제3항 제1호 및 제12호(동호 가목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토지
- 가.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분양주택이 발생하는 등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고 인정하는 지역 및 기간에 해당하고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주택건설의 착공이 곤란한 기간 및 면적을 확인하는 토지(착공이 곤란한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한다)
- 제18조 제5항 제2호중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착공이 제한된 기간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착공이 곤란하다고 확인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1항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

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제18조의2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 본문중 “영 제43조 제1항 제2호”를 “영 제43조 제1항”으로 하며, 동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영 제4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변경전 납세지 또는 변경후 납세지에 적용되는 영 제43조 제5항 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21조 제1항중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및 동법 제150조 제3항”을 “소득세법 제132조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48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인 월은 1월로 한다.

영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법위액 ×

$$\frac{\text{당해 사업연도 월수}}{12}$$

제27조의 제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등)”을 “(내용연수와 상각비율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영 제49조 제2항”을 “영 제

49조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신고는”을 “신고·변경신고·승인·변경승인은”으로 하고, 동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영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상각비율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 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

$$\frac{12}{\text{사업연도 월수}}$$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자산을 말하고, 동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자산을 말하며, 동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3 또는 별표 4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비율”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상각율을 말한다.

3.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와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제28조 제3항중 “영 제49조 제1항 단서”를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감가상각자산명세서)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는 별지 제6-6호서식 부표 2의 감가상각자산명세서에 의한다.

제32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영 제56조 제6항”을 “영 제56조 제5항 제2호”로, “공구”를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로, “간판등”을 “간판”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 제2항중 “양도한 자산이 속하는 내용연수별 자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을 “양도한 자산의”로 한다.

제45조 제3항 본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항 제11호중 “(갑)(을)”을 각각 “(갑)(을)(병)”으로 하며, 동항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35호·제36호 및 동조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34. 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 외국법인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제50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할부금융회사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채권등의 매도의 범위) 영 제91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중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그 운용방법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함에 따라 당해 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채권보유기간의 계산방법등) ①영 제91조의3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숫점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1. 채권등을 매도할 때마다 매도일 현재 보유한 채권등(매도채권등을 포함한다)의 취득일별 채권등의 수에 당해 채권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을 채권등의 총수(매도채권등을 포함한다)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 채권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2. 다음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가. 채권등의 발행일(발행일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나. 채권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이목에서 “경과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 채권등의 취득 직전에 보유한 채권등의 경과기간을 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을 채권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경과기간

3. 채권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②영 제91조의3 제2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의2 제3항중 “영 제100조의5 제2항 후단”을 “영 제100조의5 제4항 단서”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영 제100조의5 제2항”을 “영 제100조의5 제3항 및 제4항”으로, “(갑)(을)”을 “(을)”로 한다.

제59조의6 제3항 제2호중 “지수 및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동호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취득당시 영 제124조의5 제7항 ·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전기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이 경우 기준시가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전기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전기의 법 제59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액
×
취득당시의 법 제59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액

제59조의6 제7항 본문중 “의한다”를 “의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 제8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24조의5 제1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제59조의6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기타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및 제81조에 규

정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5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10(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12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발행한 법인이 소득세법시행
령 제215조 제3항의 이자·배당소득지
급명세서(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
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지
급조서제출을 갈음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금액만을 동 명
세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59조의12중 “영 제46조 제4항 및 이 규
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준하
여”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
법을 준용하여”로 한다.

제62조 제1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으로 한
다.

제68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영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 또는 변경
신고와 영 제91조의3 제8항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의 신고는 별지 제48
호서식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
(변경신고) 및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신고서에 의한다.

별표 1의 주 1중 “제118조”를 “동법 시행

령 제118조”로 하고, 별표 7의 2. 공제사
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제9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 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한다)
---	---

별표 14 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구
역을 포함한다),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도로법 제50조의 규
정에 의한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⑩”적정유보초과소득
을 “⑩적정유보초과소득(지점유보소득)”
으로 하고, 동서식 작성요령 제7호중 “⑩
란은 15%”를 “⑩란은 적정유보초과소득
에 대한 법인세과세대상 법인은 15%, 범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법인
은 범 제57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
로 하며, 동서식 작성요령 제8호 및 제10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적정유보초과소득(지점유보소득)(⑩)
: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을 적용
받는 내국법인은 별지 제60호서식
(갑)의 ⑩란 금액을 옮겨 적고, 법인
세법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별지 제59호
서식 ⑩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차감세액(⑪): ⑪산출세액에서 ⑪

공제감면세액(⑦)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별지 제3(1)호 서식(을)의 ⑥근거법조항란중 “영 제91조의3 제2항”을 “영 제91조의4 제4항”으로 하고, 동서식 작성요령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하고 취득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전에 당해 채권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별지 제3(3)호서식 (을)의 ⑨법인세란 합계액중 ()안의 금액을 ⑧세액란중 ⑯란에 기입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작성요령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①계산기준란의 산식중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또는 국외원천소득총액과 ⑤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가산하여 기입합니다.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사업연도 법인세액

별지 제4호서식중 “⑪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의 산출세액”을 “⑫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산출세액”으로 하고, 동서식 작성요령 제3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로 하며, 동서식 작성요령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⑫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산출세액은 동법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금액을 기입하며,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과 1억원중 큰 금액이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이 됩니다.

별지 제6-1호서식 작성요령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③란에는 계정과목별로 총매출액에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금액중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매출에 누리와 환입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이 경우 매출에누리에는 거래처와 개별적 사전약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일괄적 사전약정을 맺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별지 제6-6(5)호서식중 “⑮미상각잔액(⑤-⑩-⑪+⑫)”을 “⑮미상각잔액(⑤-⑩-⑪+⑬)”으로 한다.

별지 제6-6(6)호서식중 “⑯가감계(⑦+⑧+⑨+⑩+⑪)”을 “⑯가감계(⑦+⑧+

⑨-⑩+⑪)”로 하고, 동서식 작성요령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서식 작성요령 제4호중 “취득한”을 각각 “취득 또는 양도한”으로 한다.

3. ③시부인구분명란에는 내용연수미경과, 내용연수경과, 의제상각, 시험연구(시험연구용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무형자산으로 기입합니다.

별지 제6-6(7)호서식종 “⑭취득가액(⑤+⑩+⑪)”을 “⑭취득가액(⑦+⑩+⑪)”으로 하고, 동서식 작성요령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서식 작성요령 제4호중 “취득한”을 각각 “취득 또는 양도한”으로 한다.

3. ③시부인구분명란에는 내용연수미경과, 내용연수경과, 의제상각, 시험연구(시험연구용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무형자산으로 기입합니다.

별지 제10(3)호 서식의 ①구분란중 “⑯해외접대비”를 “⑯신용카드사용미달 접대비부인액”으로 하고, 동서식의 ②근거법조항란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으로 하며, 동서식 작성요령 제5호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밀비(⑩) : 별지 제6-4호서식(갑)상의 기밀비해당금액(④)에 동서식(을)상의 기밀비해당부인액(⑦)을 가산하여 회사계상금액(③)란에 옮겨 적고, 별지 제6-4호서식(갑)상의 기밀비한도초과액(⑤)에 동서식(을)상의 기밀비해당부인액(⑦)을 가산하여 세무조정금액(④)란에 옮겨 적습니다.

라. 신용카드사용미달 접대비부인액(⑯) : 별지 제6-4호서식(갑)상의 신용카드사용금액(⑯)을 회사계상금액(③)란에 옮겨 적고, 동서식상의 신용카드미사용 손금불산입액(⑰)을 세무조정금액(④)란에 옮겨 적습니다.

별지 제56호서식 작성용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⑦이자소득금액계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수입된 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별지 제57호서식(갑)의 ⑳란 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3. ⑧준비금손금산입액란에는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별지 제57호서식(갑)의 ⑪란의 금액과 ⑬란의 금액중 적은 금액)

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57호서식(갑) 작성요령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①소득금액란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⑩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동서식 ⑩란 및 ⑪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종 손금부인된 금액 또는 손금추인된 금액 및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⑩란의 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하고 손금 추인된 금액을 가산하여 기입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병)]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3(3)호서식(갑)]·[별지 제3(3)호서식(을)]·[별지 제6-4호서식(갑)]·[별지 제6-4호서식(을)]·[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1)]·[별지 제58호서식]·[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 제4항 제11호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11월 27일 이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57조의2 및 제59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7조 제5호·제7호·제13호·제17호·제19호·제22호·제36호·제39호·제40호·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7조 제5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제8조(토지의 전기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59조의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부터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기준시가의 조정

월수는 12월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times \frac{1989\text{년 }8\text{월 }30\text{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1990\text{년 }8\text{월 }30\text{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개정(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됨에 따라 동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공장건축물 또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기계장치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까지 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과 기계장치를 구분하여 건축물은 취득일 또는 사용개시일중 빠른 날까지, 기계장치는 사용개시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장치의 사용시기에 따라 건축물의 자산가액 및 손익귀속시기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개선함(영 제12조).
- 나. 종전에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대여회사의 운용리스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외화차입금의 경우 리스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함(영 제15조의2).

- 다. 종전에는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익성기부금의 대상법인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을 이 규칙에 열거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 법인의 경우 이를 법령에 열거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함(영 제17조).
- 라. 주택신축용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 바, 주택경기의 침체로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의 경우 여가·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추가로 인정하며,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일부 조정함(영 제18조).
- 마.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의무비율을 기업의 규모등을 기준으로 하여 달리 적용하던 것을 납세자를 기준으로 하여 달리 적용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사업연도중에 납세자를 변경하여 그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납세자에 적용되는 비율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영 제18조의2).
- 바.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기관투자자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함)를 추가함(영 별표 7).

〈법제처 제공〉

(별지 제1호의2서식)

(앞 쪽)

※ 관리번호 -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① 소재지				
② 법인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사업연도		⑥ 전화번호	
구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⑦ 과세표준					
⑧ 산출세액					
⑨ 총부담세액					
⑩ 기납부세액					
⑪ 차감납부할세액					
⑫ 분납할세액					
⑬ 차감납부세액					
⑭ 실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2226-00111민
'96. 1. 24 개정

210mm × 297mm
(전산용지 70μ/m²)

(뒷 쪽)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작성요령

1. 법인세란에는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세 「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⑦과세표준란에는 동서식 법인세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⑦·⑧란중 농어촌특별세란은 별지 제5호서식 ⑧, ⑫란의 ②, ③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⑨란중 농어촌특별세란 ⑧란의 농어촌특별세란의 산출세액에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4. ⑫란중 농어촌특별세란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납할 세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갑)]

(앞 쪽)

22226-01821 일

'96. 1. 24 개정

210mm × 297mm

(신문용지 54 g / m²)

(뒷 쪽)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작성요령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 ①적요란에는 사채이자, 정기예금이자등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사유를 기입합니다.
3. ⑥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은 일반법인의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을) ⑨란의 합계금액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⑯란에 옮겨 적습니다.
4.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10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을)]

(앞 쪽)

사업 연도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명						
※ 관리 번호	[]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채권등의 명칭 (액면금액)	② 취득일	③ 태도일	④ 보유기간 이자제한기간	⑤ 이자율	⑥=①x③x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⑦ 원천징수 의무자	⑧ 세율	⑨ 법인세	⑩ 납부일 (징수일)			
()												
()												
()												
()												
()												
()												
()												
()												
합계									()			

22226-01822일

'96. 1. 24 개정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작성요령

1. 채권등의 명칭란에는 국채·지방채·회사채·예금증서·개발신탁수익증권·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어음·기타 증권의 명칭과 권면가액(액면금액)을 ()로 기입합니다.
2. ②취득일란에는 채권등의 취득일·유상이체일·발행일·매출일·직전이자지급약정일등 보유기간계산의 기산일을 기입합니다.
3. ③매도일란에는 채권등의 매도일·이자지급약정일·유상이체일·상환일·중도해지일등 보유기간계산의 말일을 기입합니다.
4. ④보유기간란은 채권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는 ②취득일과 ④매도일중 한편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5. ⑤이자율란은 약정된 이자계산기간 및 방식에 의한 이자율(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각 이자계산기간의 보장이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 이자율을 기입합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는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자율을 기입합니다.
6. ⑩납부일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입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외의 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기입합니다.
7. 영 제91조의3 제1항 후단에 규정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②취득일란과 ③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기입합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등을 만기일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②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③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기입하고 ⑨법인세란과 합계란은 ()로 표시하여 영 제91조의4 제4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⑩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8.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영 제10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단위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기입합니다.
9. ⑨법인세 합계란의 금액은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⑩란에 옮겨 적고 ()안의 금액은 별지 제3(1)호서식(을)의 ⑯란에 옮겨 적습니다.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 신탁재산분 법인세 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⑥란에 옮겨 적고 ()안의 금액은 같은 서식 ⑦란에 옮겨 적습니다.

[별지 제6-4호서식(갑)]

(앞 쪽)

사업 연도	~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기밀비한도초과액조정		3. 접대비손금불산입액조정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자기자본(⑦50억한도) × 1/100		⑯ 신용카드사용금액	
② 기준수입금액 × 35/100,000 (5/10,000)		⑰ 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 (⑯ ÷ ⑯)	
③ 기밀비한도액(① + ②)		⑰ 신용카드사용비율(⑯/⑰ × 100)	
④ 기밀비해당금액		⑲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	
⑤ 기밀비한도초과액(④ - ③)		⑳ 신용카드사용미달비율(⑮ - ⑰)	
⑥ 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할 기밀비(③과 ④중 적은 금액)		㉑ 신용카드 미사용 손금불산입액 (⑰ × ⑲)	
2. 접대비한도초과액조정		4. 자기자본계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⑦ 24,000,000 × 월수() 12		㉒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내차내조표상 자산총계	
⑧ 자기자본(⑦50억한도) × 2/100		㉓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내차내조표상 부채총계	
기준 수입 금액	⑨ 부동산업 등 × 5/10,000 (1/1,000)	㉔ 자기자본 $\{(\text{㉒} - \text{㉓}) \times \frac{\text{사업연도 월수}}{12}\}$	
기 타 사 업	⑩ 100억이하 × 3/1,000 100억 ~ 1,000억 × 2/1,000 1,000억초과 × 1/1,000		
	소 계		
⑪ 접대비한도액 (⑦ + ⑧ + ⑨ 또는 ⑩의 소계)			
⑫ 접대비해당금액			
⑬ 접대비한도초과액(⑪ - ⑫)			
⑭ 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 (⑪ 또는 ⑫ 중 적은 금액)			

22226-549111일
'96. 1. 24 개정210mm × 207mm
(신문용지 54 g / m²)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1. ②기준수입금액란에는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의 ⑦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④기밀비해당금액란에는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의 ⑬란의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3. ⑨부동산업등 기준수입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⑤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④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⑩기타사업 기준수입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⑥기타란의 금액(중소기업의 경우에는 ②, ③, ⑥의 합계금액)을 100억이하, 100억~1,000억, 1,000억 초과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5. ⑫접대비 해당금액란에는 ⑥란의 금액과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⑯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6. ⑭손금산입한도내접대비지출액은 ⑪과 ⑫중 적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7. ⑯~⑳란은 납세지를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접대비를 지출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⑯~⑳란의 기입을 생략하고 별지 제6-4호서식(병)을 작성합니다.
8. ⑮신용카드사용금액란에는 접대비중 신용카드사용금액과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의 합계금액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⑯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⑯손금산입한도내 접대비지출액란에는 ⑭의 금액을 기입하되, 별지 제55호서식(2) 접대비지출명세서(2)에 현물접대(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접대하는 경우에 한함)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⑯란의 금액에서 현물접대비의 당해 사업연도중 지출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10. ⑰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란에는 납세지를 기준으로 특별시지역은 75퍼센트, 광역시지역은 60퍼센트, 시지역은 50퍼센트, 군지역은 40퍼센트를 기입합니다. 다만, ⑯-⑥/⑯의 비율이 해당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보다 적을 때에는 동비율을 기입하고, ⑫접대비 해당금액이 연간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하며, 사업연도중에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납세지 또는 변경후 납세지에 적용되는 신용카드비율중 적은 비율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을)]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	법인명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수입금액 명세

① 구 분	② 소비성 서비스업	③ 부동산업	④ 특수 관계거래	⑤ 소계	⑥ 기타	⑦ 합계
⑧ 금액						

2. 접대비등 해당금액

⑨ 계정과목						합계
⑩ 계정금액						
⑪ 접 대 비 등 액	⑫ 접대비 해당액					
	⑬ 기밀비 해당액					
	⑭ 소계					
	⑮ 신용카드 사용금액					
⑯ 해당 보인액	⑯ 접대비					
	⑰ 기밀비					

22226-55011일

'35. 1. 24 개정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뒷 쪽)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1. ② · ③ · ④ · ⑥란에는 해당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별지 제6-1호 서식 ③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수입금액에서 수익증권매각 대금의 100분의 65를 차감하여 기입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수입금액에서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40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2. ⑯신용카드사용금액란은 별지 제55호서식(1)의 ⑧과 ⑨의 합계액중 당해사업연도에 지원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병)]

(앞 쪽)

사업 연도	~	접대비등조정명세서(병)	법인명	
----------	---	--------------	-----	--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신용카드사용 대상금액

① 구 분	② 기 밀 비			⑤ 소 계	⑥ 접 대 비 (⑦=③+⑥)	⑦ 합 계 (⑦=③+⑥)
	③ 사용지역 확인금액	④ 사용지역 미확인금액	⑧ 금 액			

2. 신용카드 미사용 손금부인금액 계산

⑨ 지역별구분	⑨ 특별시	⑩ 광역시	⑪ 시	⑫ 군	⑬ 국외	⑭ 합계
⑯ 접 대 비 해당액						
⑯ 사용지역 확인기밀비						
⑯ 사용지역미확인기밀비 (④ × ⑯ 란 ⑨ ~ ⑬) ⑯ 란 ⑯						
⑯ 총 접 대 비 지출액 (⑯ + ⑯ + ⑯)						
⑯ 지역별접대비지출액 (⑦ × ⑯ 란 ⑨ ~ ⑬) ⑯ 란 ⑯						
⑯ 신용카드사용금액						
⑯ 신용카드사용비율 (⑯ = ⑯ × 100)						
⑯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						
⑯ 신용카드미사용손금부인액 (⑯ × (⑯ - ⑯))						

22226-69311일

'96. 1. 24. 제정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접대비등조정명세서(병) 작성요령

1. ②란은 별지 제6-4호서식(갑)의 ⑥란의 금액을 사용지역이 확인되는 금액과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 ⑥란은 별지 제6-4호서식(갑) ⑪란의 금액에서 동서식 ⑥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3. ⑦란은 별지 제6-4호서식(갑)의 ⑪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⑯란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해당금액(별지 제6-4호서식(을 ⑯란 합계금액))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국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5. ⑯란에는 제55호서식(2) 접대비지출명세서(2)에 현물접대(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접대하는 경우에 한함)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6. ⑳란은 접대비중 신용카드사용금액과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국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합계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의 ⑯란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7. ㉓란은 접대비를 지출한 지역을 기준으로 특별시지역은 75퍼센트 광역시지역은 60퍼센트, 시지역은 50퍼센트, 군지역은 40퍼센트를 기입하며 국외지역은 당해 범인의 납세지 소재지역을 기준으로 특별시지역은 75퍼센트, 광역시지역은 60퍼센트, 시지역은 50퍼센트, 군지역은 40퍼센트를 기입합니다. 다만, $\frac{㉓ - (⑯ + ㉒)}{⑯} \times 100$ 의 비율이 해당 지역별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율을 기입하고 ⑳란 ⑭합계금액이 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8. ㉔란중 ⑨, ⑩, ⑪, ⑫, ⑬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사업 연도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명																				
※ 관리 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구분	② 요 건	③ 검 토 내 용	④부합 여부	⑤적정 판정																			
중 소 기 업 체 금 사 업	1. 해 당 사 업	<p>제조업·공업·건설업·운수업(조세 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7항의 물류사업과 여객운송업)·어업·도 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연구및 개발업·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 항의 방송업·조세감면규제법시행 령 제6조제5항의 엔지니어링사업 및 제6조제6항의 정보처리및컴퓨 터운용관련업·조세감면규제법시 행령 제39조제1항의 자동차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 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p> <p>가. 주된 사업() 나. 기타사업 겸업시의 주된 사업</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 업태별</th> <th>사업수입 금액</th> <th>유형고정 자산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업</td> <td></td> <td></td> </tr> <tr> <td>기타사업</td> <td></td> <td></td> </tr> <tr> <td>계</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업태별	사업수입 금액	유형고정 자산금액	()업			기타사업			계			부합	적							
	구분 업태별	사업수입 금액	유형고정 자산금액																				
	()업																						
	기타사업																						
계																							
2. 종 업 원 수	중소기업 기본법시 행령 별표 1의 기 준이내(어업의 경 우 300인이내)	<p>가. 상용종업원수(기증최고인원) ()월 ()명</p> <p>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해당업종 기준 ()명이하 다. 종업원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초 명</th> <th>기말 명</th> <th>비고</th> </tr> </thead> </table>	기초 명	기말 명	비고	부합 불부합																	
기초 명	기말 명	비고																					
3. 자 산 총 액	중소기업기본법시 행령 별표 2의 기 준이내	<p>가. 자산총액(기말장부가액) 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해당업종 기준 ()억원초과 다. 자산증감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 사업연도</th> <th colspan="4">자산총액</th> </tr> <tr> <th>기초</th> <th>증</th> <th>감</th> <th>기말</th> </tr> </thead> <tbody> <tr> <td>전기</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당기</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사업연도	자산총액				기초	증	감	기말	전기					당기					부합 불부합	부
구분 사업연도	자산총액																						
	기초	증	감	기말																			
전기																							
당기																							
4. 소 유 · 경 영 의 독 립 성	중소기업기본법시 행령 제2조제2호의 기준에 의한 독립 성 충족	○ 통상산업부장관이 독립성이 없 다고 고시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부합 불부합																				

20226-05511일

'55. 1. 24 개정

210mm × 297mm

(신문용지 54 g/m²)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요령

1. 주된 사업의 검토에 있어서 2개이상의 제조업 또는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2. 상용종업원수는 출자임원 및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매월말 현재 인원에 의하여 검토합니다.
3. 기존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종업원수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검토합니다. 다만, 합병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부합여부란은 부합 또는 불부합에 ○표를 합니다.
5. 적부 판정은 요건 1, 2, 3, 4가 동시에 부합되는 경우에 적격으로 판정합니다.

[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 및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법인명 ③ 본점소재지 ④ 대표자성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민등록번호		
신고내용	⑥ 사업개시일	년 월 일	⑦ 변경방법적용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재고자산의 종류	평가방법(변경전)		평가방법(변경후)
	⑧ 상품및제품	법		법
	⑨ 반제품및제공품	법		법
	⑩ 원재료	법		법
	⑪ 저장품	법		법
	⑫ 위에준하는자산	법		법
	⑬ 상장및 장외등록 유가증권	⑭ 매매또는 단기투자목적 기타목적	법	
	⑮ 변경사유			
	⑯ 동일종목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4항 및 제91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와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신고일: 1.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변경신고 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내) 2.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최초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또는 최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수수료 없음

22226-21011번
'96. 1. 24 개정210mm x 297mm
(신문용지 54g/m²)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 및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작성요령

1.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4항 제1호에 의한 신고는 변경전 평가방법란의 해당란에 기입하여 신고하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 우측에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로 처리 됩니다.
2.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변경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⑯란을 기입하지 아니하고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⑧~⑯란을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 ⑯란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중 선택한 방법을 기입합니다.

접대비지출명세서(1)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법인명		② 업종	
신고인	③ 본점소재지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 기간중 접대비 발생액 및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⑥ 구분	⑦ 접대비 발생액	명세서제출		
		⑧ 신용카드거래분	⑨ 세금계산서거래분	
전수				
금액				
제외대상				⑭ 명세서(2)
⑩ 소액접대비	⑪ 기밀비	⑫ 국외지출 접대비	⑬ 계 $(⑧+⑨+⑩+⑪+⑫)$	제출대상 $(⑦-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뒷 쪽)

접대비지출명세서(1) 작성요령

1. ⑦접대비발생액은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서 기밀비·해외접대비·모집권유비를 포함합니다.
2. ⑩의 소액접대비는 ⑧신용카드거래분, ⑨세금계산서거래분, ⑪기밀비, ⑫국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외 접대비로서 거래건당가액이 10만원이하인 금액을 말합니다.
3. ⑫국외지출접대비란에는 국외지출접대비중 ⑧란에 기입한 신용카드거래분을 제외한 국외지출접대비를 기입합니다.

[별지 제58호서식]

(앞 쪽)

정 수 연 월 일	.. .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환급(충당)세액 계산내역

구 분	원천정수내역		
	이자	배당	계
신탁이익분배에 따른 원천정수세액	① 인원		
	② 지급액		
	③ 과세표준		
	④ 세율		
	⑤ 법인세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	⑥ 법인세		
신탁재산귀속추가납부세액	⑦ 법인세		
신탁재산분세액(⑤-⑥+⑦)	⑧ 법인세		
원천정수납부할세액 (신탁이익분배이외의분)	⑨ 법인세		
환급세액충당액	⑩ 법인세		
차감환급세액(⑧-⑩)	⑪ 법인세		

22226-49011일

'96. 1. 24 개정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작성요령

1. ※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신탁재산에 대한 본점일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신탁이익분배금만이 있는 신탁회사지점등의 경우는 본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신탁회사외의 경우는 ⑨~⑪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①~⑤란은 신탁회사가 신탁이익(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 포함)을 법인에게 분배함에 따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하며, 동 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신탁재산분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신탁재산귀속 원천납부세액란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을)중 ⑨법인세란 합계금액을 이기합니다.
5. 신탁재산분 추가납부세액란은 별지 제3(3)호서식(을) ⑨법인세 합계란중 ()안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6. ⑧란이 납부(+)인 경우에는 ⑨, ⑩, ⑪란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환급(−)인 경우에는 ⑨의 법인세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환급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⑩란을 기입하되 ⑩란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소득세징수액집계표상 신탁재산환급충당금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9호서식]

(앞 쪽)

사업연도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명
* 관리번호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② 법인세			
③ 소득할 주민세			
④ 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 (①-②-③)			
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자본금 상당액			
⑥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본금 상당액			
⑦ 재투자인정금액 (⑤-⑥)			
⑧ 자본금상당액 감소액 (⑥-⑤)	⑨ ⑧~⑪중 작은금액,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0		
⑩ 과세대상소득금액(④-⑦) 또는 (④+⑨),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0			
⑪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과세누적 유보소득			
⑫ 당해사업연도 미과세유보 소득			
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과세누적 유보소득(⑪+⑫)			

22226-69111일

'96. 1. 30 개정

210mm x 297mm
(신문용지 54g/m²)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1. ①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서식)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06)을 옮겨 적습니다.

2. ②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상으로 부담세액중 법 제57조의2에 의한 과세특례(지점세)세액을 제외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3. ③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할 주민세중 법 제57조의2에 의한 과세특례(지점세)분 소득할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⑦란에는 ⑤란의 금액이 ⑥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기입합니다.

5. ⑧란에는 ⑥란의 금액이 ⑤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기입합니다.

6. ⑪란은 '96.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직접사업연도에 대하여는 0으로 합니다.

7. ⑫란은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④-⑩(1+지점세 세율)